

연구윤리센터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연구윤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직무) ① 센터는 본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 보호 및 안녕 등 연구대상자에게 지켜야 할 윤리, 연구과정 이나 내용을 조작하지 않을 윤리, 연구결과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연구 할 윤리 그리고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에 있어 윤리성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연구윤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연구윤리·진실성검증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
2. 생명윤리심의와 관련된 지원 및 관리 업무 수행
3. 동물실험윤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
4. 연구윤리교육 관련 사항
5.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접수 및 조사 등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②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조 (구성)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센터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센터에는 제반 업무를 위해 직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운영계획 및 운영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6조 (운영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운영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연도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

3. 기타 사항

제7조 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교비 및 심사비,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③ 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 (운영세칙) 제2조 1항 1호 내지 3호의 각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